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
취소 청구(유흥주점 등)
사 건 번 호 2019-116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재 결 일 자 2019. 10. 14.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1. ◇◇광역시 ■■■ △△△ ◇◇◇◇(□□□ □□□)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면적 4,537.067㎡(이하 ‘신청지’ 라 한다)

건물 각 층에 담배자동판매기,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미니게임기업, 당구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생활숙박업, 만화대여업 총 13개 업종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2019. 6. 21. 당구장, 노래연습장 2개 업종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담배자동판매기,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미니게임기업, 무도학원, 비디오물감상실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생활숙박업, 만화대여업 11개 업종은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6. 2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9. 8. 2.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 건물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271m 거리에 있는 등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앞에는 수많은 고층빌딩이 있어서 학교건물과 운동장에서 보이지 않고, 주통학로도 아니며, 상업지역으로 주변에 동일한

업종이 있고, 해당건물로부터 5분 이내에 ●●지구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학교 학교장도 의견서에 ‘학생들의 학업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고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신청지 건물 3층 중 일부(약 90평)에서 1993. 9. 20.부터 2009. 9. 25.까지 *** 가요주점(단란주점)이 영업한 사실이 있어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를 하더라도 학생들 학습권, 생활권 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신청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신청한 업종들에 관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건물임대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해서 청구인의 생존권을 심히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명시된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여, 보호위원회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제 또는 금지처분을 한 것이다.

나. 보호위원회에서는 심의 시 학교장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고 하여 그 의견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신청지 현황, 주변 환경,

심의이력, 학교장 의견 및 학생들에게 미칠 유해성, 신청지 건물에 위치할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정도와 접근성, 향후 신청지에 금지행위 및 시설이 위치하게 될 경우 학습과 보건위생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심의요청 한 13개 업종 중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업종은 해제하고 나머지 업종에 관해서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에서 학생들의 접근성 및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과 신청지 주변의 동일업종 및 유사업종 운영여부와 이전 심의이력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지” 결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1.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2.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건물이 학교 정문으로부터 271m 거리에 있

는 등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 2호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144m이므로 상대보호구역에 속해서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 규정에 의거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가 판단해서 “해제” 또는 “금지” 처분을 결정할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신청지가 상업지역으로 주변에 동일한 업종이 있고,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고층빌딩들이 있어서 학교건물과 운동장에서 보이지 않으며, 주통학로도 아니어서 ◎◎◎학교장도 ‘학업에 나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지가 상업지역이고,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에서 보이지 않으며 주통학로가 아니어서 ◎◎◎학교장도 학업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제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보호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신청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등)을 연결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이 신청지 건물과 연결되는 검단사거리 주변 음식점, 카페, 영화관, 편의점, 의료시설, 교회, 우체국 등의 시설이용률이 높다는 점, 신청지 건물 인근 횡단보도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8개의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

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낮거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지 건물에서 ●●●학교 방향의 건물은 고층건축물이 아닌 2층에서 5층까지 건물이 혼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제 ●●●학교의 재적학생 수의 약 17%인 150여명이 신청지 건물 앞 통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및 피고인의 신청사유 및 금지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정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해서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업종은 해제하고, 나머지 업종은 학습권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신청지 건물 3층에서 1993. 9. 20.부터 2009. 9. 25.까지 ***가요주점(단란주점)이 영업했지만 학습권, 생활권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건물임대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교육환경법 시행 전인 1993. 9.경부터 신청지 건물 3층 중 일부(약 90평)에서 가요주점(단란주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후 지위승계신고를 통해서 2009. 9.경까지 운영된 점은 인정되나,

위 가요주점이 폐업신고 된 후에 이 사건 신청지 건물에 관해서 신청된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미니게임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만화대여업, 무도학원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접근성,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처분이 된 이력이 있고, 보호위원회는 신청지 주변 동일, 유사업종 신청 건에 관해서도 일정 기준 하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환경보호제도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인 제도이고, 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는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보호구역 안에서 만이라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시설 금지결정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그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지된 업종을 하려고 하는 임차인에게는 건물임대가 제한되지만 그 외 업종을 하려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가 가능해서, 재산적 침해나 불이익의 정도가 제한적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이익보다도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